

2016년 성동구 자활사업 위·수탁 계약서

성동구 자활사업의 일환인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하 “자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의 위탁자인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수탁자인 성동지역자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간에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1. 사업명: 2016년 성동구 자활사업
2. 사업기간: 2016. 1. 1. ~ 12. 31.
3. 지원금액: 1,244,443천 원

제 1 조(목적) 본 협약은 사업의 범위, 예산의 지원 및 집행, 결과보고, 협약 당사자 간의 책임, 협약의 효력 등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사업의 범위) “구”는 “센터”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센터”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1. 자활사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2. 사업 참여자(자활근로인력) 신청접수 및 선발에 관한 사항
3. 자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5. 사업예산의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각조에서 정하는 사항

제 3 조(사업기간) ①사업기간은 2016. 1. 1. ~ 12. 31.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다만, 사업시행기간은 사업 준비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구”와 “센터”의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 4 조(사업의 수행) “센터”는 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예산서, 그리고 「2016 자활사업안내」 등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5 조(사업의 계획) 자활사업의 사업계획 및 예산사항은 “구”와 “센터”가 협의하여 수립·추진하되, 필요시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제 6 조(예산의 집행범위) “구”가 “센터”에게 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급한 예산은 다음과 같

이 지급한다.

1. (인건비) 전체예산의 70% ~ 80%이상으로 하고, 실비를 포함한다.
2. (사업비) 전체예산의 20% ~ 30%이하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자재비·수용비(관리비 및 기타 경비 포함)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차량 임차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임차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예산의 지급) ①“구”는 “센터”에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금액의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잔금은 “센터”의 청구에 의거하여 지급하되 월간 보고에 의하여 집행실적 및 자활근로자의 근무상황 등을 확인한 후 “센터”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센터”는 사업예산을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예산의 사용) ① “센터”는 “구”가 지급한 사업예산을 제6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사업 참여자의 인건비는 월급으로 지급하되 일일 노임단가는 실비(교통비 및 식대) 3,000원 포함하여 1일 시장진입형 37,870원, 사회서비스형 34,260원, 근로유지형 25,540원으로 한다.

③사업 참여자의 근무조건은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주 5일 근로 시 주 1회의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을 인정하고, 사업 시행기관이 근무하기로 정한 날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월 1회 월차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을 인정한다.

④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1일 5~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8시간 초과 근무 시에는 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 등 제반비용은 “센터”의 자체 재원(예: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⑤기타 지각, 조퇴 및 우천으로 인한 작업 중단도 근로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센터”는 사업에 대한 회계장부를 자체 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고, “구”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관계서류열람, 현장 확인, 관련자료 제출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센터”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센터”는 “구”에게 인력투입 및 예산운영 사항 등에 대하여 “구”가 정한 서식에 따라 매월 6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센터”의 의무) ①“센터”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공익에 반하는 행위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산재보험 등의 가입) “센터”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자활근로인력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지급보증) “센터”는 이 협약에 따른 지원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중 하나를 선금지급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의 인정에 의해 “센터”의 모법인 등의 지급보증각서로 갈음하거나, “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센터”는 제반여건 및 기타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의 추진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건 또는 사고에 대하여는 “센터”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⑥“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센터”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추진결과 제출) ①“센터”는 “구”가 지급한 사업예산의 집행 실적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을 실시한 후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를 사업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②“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예산의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센터”에게 이의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③“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수익금의 처리) ①“센터”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별도 계정으로 적립·관리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에 대하여는 「2016 자활사업안내」의 수익금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자활기업 창업 이외의 사유로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전액을 적립금 내역이 기재된 회계장부와 함께 “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자활기업관리) ①“센터”는 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전환 시 사업내용 및 인적구성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안정적인 자활기업 운영이 되도록 적극 지원한다.

②“센터”는 자활기업과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발전적 운영 및 육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14조(협약의 해지·해제) ①“구”와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추진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 9조에 의한 “구”의 지도 감독을 따르지 않거나, 제10조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3. “센터”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구”의 예산사정 등에 의하여 사업을 취소할 경우
5. 기타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면 “센터”는 그 해지 또는 해제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정산서를 10일 이내에 “구”에게 제출하고,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수익을 포함하여 전액 현금으로 “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센터”는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16조(협약의 해석 등) ①이 협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협약서의 제 규정에 대하여 “구”와 “센터” 간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구”의 의견에 따른다.

②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구”는 “센터”가 실시하는 인력 투입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적절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협약의 체결사실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구”와 “센터”가 서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첨부 :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예산서

부 칙

①(시행일) 이 협약은 2016. 1. 1. 부터 시행한다.

2016년 1월 일

“위탁자” 성동구청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장 정 원 오 (인)

“수탁자” 서울성동지역자활센터

서울시 성동구 매봉길 21

서울성동지역자활센터장 이 규 선 (인)